

(기 관 명)

문서번호

시 행 일

받 음

제 목 토지 용도 ·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5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보합니다.

- 아 래 -

매립시설 설치자	
매립시설 소재지	
이용용도	
이용기간	

시·도지사
유역(지방)환경청장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협조자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전화번호() 팩스번호() 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